

GPL의 발전: GPL-3.0, AGPL-3.0

2024. 2. 14.

ETRI 오픈소스센터

엄승광

내용

1. GPL-3.0
2. AGPL-3.0

1. GPL-3.0

라이선스 비교 – GPL-2.0, GPL-3.0, AGPL-3.0

AGPL-3.0		GPL-3.0		GPL-2.0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서문	취지 및 의도	서문	취지 및 의도	서문	취지 및 의도
제0조	정의	제0조	정의 (GPL-2.0에서 추가 확장)	제0조	정의
제1조	소스코드	제1조	소스코드		
제2조	기본적인 허용사항	제2조	기본적인 허용 사항		
제3조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제3조	우회금지법으로부터의 사용자 법적 권리 보호		
제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복제, 수정, 배포) 행위	제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에 대한 컨베이	제1조	소스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
제5조	수정된 소스 버전의 컨베이 행위	제5조	수정된 소스 버전에 대한 컨베이	제2조	파생저작물의 정의 및 배포 시 의무사항
제6조	비(非)소스 형식의 컨베이 행위	제6조	소스 이외의 형태에 대한 컨베이	제3조	오브젝트 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
제7조	추가 조건들	제7조	추가 허용사항		
제8조	종료	제8조	종료 (GPL-2.0에서 추가 확장)	제4조	종료
제9조	복제본 소유에 대한 라이선스 수용의 조건	제9조	복제본 소유에 대한 라이선스 수용의 조건	제5조	라이선스 수용 조건
제10조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허가	제10조	하향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 허가 – 특허 관련	제6조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 허가
제11조	특허	제11조	특허 (특허보복조항) – 기여자만 보호	제7조, 제8조	특허권의 취급 제8조: 특허권 관련 배포 제한
제12조	타인의 자유 보장	제12조	타인의 자유 보장(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면 GPL 배포 금지, 배포 조건 명시)		
제13조	원격 네트워크 대화: GPL-3.0과의 병행 사용	제13조	AGPL과의 병용		
제14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	제14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 버전	제9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 버전
제15조	보증의 부인	제15조	보증의 부인	제11조	보증의 부인
제16조	책임의 제한	제16조	책임의 제한	제12조	책임의 제한
제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제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적용법	새 프로그램에 이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법	새 프로그램에 이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법	새 프로그램에 이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법

GPL-3.0 연혁

- 2006년 1월 첫번째 안 발표
- 2006년 7월 두번째 안 발표
- 2007년 3월 세번째 안 발표
- 2007년 5월 네번째 안 발표
- 2007년 6월 29일 GPL-3.0 공식 발표

GPL-3.0 등장 배경

- 오픈소스 라이선스 증가와 오픈소스 라이선스간 양립성 문제
- DRM 기술의 확대적용과 법적 보호 문제
- 특허권 취급 문제
- P2P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환경변화
- 네트워크 서버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의 처리 문제

GPL-3.0 주요 특징

- 기본 사항은 GPL2.0과 동일
- 용어 상세화 및 신규 정의 추가 (서문, 제0조, 제1조)
-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 (제3조)
- 설치정보 제공 조항 (제6조)
- P2P 관련 내용 추가 (제6조, 제9조)
- 특허보복 조항 (제10조)
- AGPL 양립 조항 (제13조)

GPL-3.0 주요 내용

내용	허용 여부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가능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가능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가능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파생저작물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가능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가능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가능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보증의 부인	가능
책임의 제한	가능

GPL-3.0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
-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할겠다는 약정서 제공
-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GPL-3.0 라이선스 조항 (1)

조항	내용
서문	취지 및 의도
0조	용어 정의
1조	소스코드 정의
2조	기본적인 허용사항
3조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5조	수정된 소스의 컨베이 행위
6조	비소스 형태의 컨베이 행위
7조	추가 조건
8조	종료
9조	복제본 소유에 대한 라이선스 수용의 조건

GPL-3.0 라이선스 조항 (2)

조항	내용
10조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허가(특허보복조항)
11조	특허
12조	타인의 자유 보장
13조	AGPL과의 병행사용
14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
15조	보증의 부인
16조	책임의 제한
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GPL-3.0 라이선스 분석 – 정의(0조)

- “프로퍼게이트(propagate)” 행위는 복제, (원본이나 수정본의) 배포 및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 “컨베이(convey)”하는 것은 제3자가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
- ‘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라는 용어로 대체

GPL-3.0 라이선스 분석 – 소스 코드(1조)

- 저작물의 “소스 코드”란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
- “오브젝트 코드”란 저작물의 비소스적 형태 전부를 의미
-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

GPL-3.0 라이선스 분석 – 라이선스 범위(2조)

-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며,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취소되지 않음
- 라이선스가 유지되는 한, GPL 적용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제작 및 실행, 배포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 방식을 인정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3조)

-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곧 그 저작물에 대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
- 저작물에 대한 조작과 수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신과 제 3자의 기술수단에 대한 우회행위 금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
- GPL-3.0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DRM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소스코드 전달시 의무사항(4조)

-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전달 가능
-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명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함
- 본 라이선스와 제7조에 따라 추가된 비허락적(non-permissive) 조항들이 코드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고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소스코드 전달시 의무사항(5조)

- 제4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정물을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어할 수 있음
- 수정 사실 및 수정 일시를 명시하는 눈에 띄는 고지가 저작물에 담겨 있어야 함
- 저작물이 본 라이선스 및 제7조에 추가된 모든 조건들에 의거하여 릴리스 됨을 밝히는 눈에 띄는 고지가 담겨 있어야 함
- 저작물의 복제본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을 허가해야 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오브젝트 코드 전달시 의무사항(6조)

- 본 라이선스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 한다는 조건 하에,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GPL 적용 저작물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음
 - a)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 하되, 소프트웨어 상호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에 해당 소스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 b)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 하되, 적어도 3년 이상 유효하고 당신이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고객지원이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서면 약정서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GPL-3.0 라이선스 분석 – 오브젝트 코드 전달시 의무사항(6조)

- c) 해당 소스를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서의 복제본 한 부와 오브젝트 코드의 개별적인 복제본을 컨베이는 방식
- d)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오브젝트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오브젝트코드를 컨베이는 방식
- e) 오브젝트 코드를 P2P 전송을 이용하여 컨베이는 방식. 단, 이 경우, 다른 P2P 사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오브젝트 코드와 해당 소스가 제6조 d항에 따라 무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설치정보 제공(6조)

- “사용자 제품” 은 (1) 개인이나 가족, 가사의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소비자 제품”이거나, (2) 거주지를 구성할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에 해당
- 사용자 제품의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의미

GPL-3.0 라이선스 분석 – 설치정보 제공(6조)

- 본 조항에 따라 오브젝트 코드 저작물을 사용자 제품의 내부에 포함된 형태로 컨베이 하거나 제품 자체와 함께, 혹은 제품 내에서 사용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컨베이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컨베이 행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수취인에게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전되는 거래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관계 없이)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 되는 해당 소스는 설치 정보를 수반해야 함
- 컨베이 되는 해당 소스 및 설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그리고 소스 코드의 형태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하며, 이를 풀어내거나 읽거나 복제하는 데 있어 특별한 암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됨

GPL-3.0 라이선스 분석 – 추가 조건(7조)

- “추가허용사항”은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 내에서 하나 이상의 예외 조건들을 만듦으로써 이들을 보완하는 조건
 - a) 본 라이선스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 b) 해당 자료나 그것을 포함하는 저작물이 표시하는 적절한 법적 고지 내에 상술된 적절한 법적 고지나 저작자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GPL-3.0 라이선스 분석 – 추가 조건(7조)

- c) 해당 자료의 출처의 그릇된 표현을 금지하거나 해당 자료의 수정된 버전이 원본과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하는 조항
- d) 해당 자료의 저작자나 사용허가자의 이름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 e)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에 따르는 권리 부여를 거부하는 조항

GPL-3.0 라이선스 분석 – 특허보복조항(10조)

-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기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전체나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수입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GPL-3.0 라이선스 분석 – 특허(11조)

- “기여자”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저작권자
- 기여자의 “필수 특허청구범위”란 기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현존 또는 잠재적 특허 전부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 기여자는 필수 특허청구범위 하에 전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부여. 이 특허를 통해 기여자 버전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다른 방식으로 실행, 개조 및 프로퍼게이트 할 수 있음

GPL-3.0 라이선스 분석 – 특허(11조)

- 특허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사람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
- 배포자가 제3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1) 공중이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서버 등을 통해 무료로 관련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게 하거나,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특허라이선스의 혜택을 스스로 박탈하거나, 3) GPL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특허라이선스를 후방 이용자에게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특허가 포함된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음

GPL-3.0 라이선스 분석 – 특허(11조)

- GPL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허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경우 후방 라이선시들에게도 특허라이선스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음

GPL-3.0 라이선스 분석 – 라이선스 양립성(13조)

- GPL 적용 저작물을 AGPL-3.0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긴 저작물을 컨베이어할 수 있음
- GPL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만, AGPL 라이선스 제13조에 제시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에 관한 특별 조건들은 결합된 형태의 저작물 전체에 적용됨

2. AGPL-3.0

AGPL-3.0 특징

- AGPL은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사례에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
- AGPL-1.0은 GPL-2.0을 기반으로 AGPL-3.0은 2007년 GPL-3.0을 기반으로 제정
- GPL-3.0을 네트워크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규정
- GPL-3.0과의 상호운용성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

AGPL-3.0 주요 내용

내용	허용 여부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가능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가능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가능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코드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가능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가능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가능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가능
보증의 부인	가능
책임의 제한	가능

AGPL-3.0 배포시 의무사항

- 수정버전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대화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해당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
-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할겠다는 약정서 제공
-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AGPL-3.0 라이선스 조항 (1)

조항	내용
서문	취지 및 의도
0조	용어 정의
1조	소스코드 정의
2조	기본적인 허용사항
3조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5조	수정된 소스의 컨베이 행위
6조	비소스 형태의 컨베이 행위
7조	추가 조건
8조	종료
9조	복제본 소유에 대한 라이선스 수용의 조건

AGPL-3.0 라이선스 조항 (2)

조항	내용
10조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허가
11조	특허
12조	타인의 자유 보장
13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제공, GPL-3.0과의 양립성
14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
15조	보증의 부인
16조	책임의 제한
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AGPL-3.0 라이선스 분석 –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제공(13조)

-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 버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대화하는 모든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해당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명시적으로 제안해야 함
-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표준적이거나 관습적인 수단을 통하여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해당 소스에 대한 무료 접근을 허용해야 함

AGPL-3.0 라이선스 분석 – GPL-3.0과의 양립성(13조)

-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항과도 관계 없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GPL-3.0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긴 저작물을 컨베이어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만, 함께 결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GPL-3.0에 의해 구속됨

참고자료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 교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6월.
- 〈GPL3.0의 배경, 경과와 주요내용〉,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 2007년 9월.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olis.or.kr/>.

ETRI Open Source Center

